

구매물품보장보험(삼성카드) 사고접수 유의사항

※본 손해접수지침은 청구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가입증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유의사항과 약관 내용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 약관의 내용에 의합니다.

제출서류

본 신청서와 함께 하기의 서류를 [chubb.kr/ Claim](http://chubb.kr/Claim) (url - mobile, 인터넷 사고접수 site)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청구서 (유첨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포함), 피보험자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2. 거래금액을 입증할 서류 및 인터넷화면캡처
3. 구매당시 판매자가 등재한 물품 사진 / 물품 수령 후 박스 및 손상품 사진
4. 택배사 배송 이력 화면 캡처
5. 파손 및 사이즈 색상 등 오배송으로 교환을 위해 반품시 : 반품운송장, 반품배송비용 영수증 (판매자 비용으로 처리시 제외)
6. 파손 및 사이즈 색상 등 오배송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거절시 : 판매자와 주고 받은 메일 또는 문자캡처
7. 파손시 : 수리비내역서 (파손품 국내수리시) / 파손물품 화물수령확인서 (수리불가로 전손시)
8. 분실, 도난, 망실 (사기)시 : 경찰서사고접수확인서

보상하는 손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장기간 중 목적물이 운송과정에 있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망실, 도난, 파손 혹은 파괴되었을 때 아래와 같은 비용 또는 금액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용 또는 물품구매금액 (2) 목적물이 망실/도난되었을 경우, 망실/도난에 상응하는 물품구매금액 2. 손상의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망실(분실 & 오배송)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실 : <u>해외운송의 경우 배송시작일을 포함하여 90일</u>이 되는 날의 자정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국내운송은 7일) 나. 오배송: 주문과 상이한 물건도착 (<u>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품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u>) (2) 도난: 주문한 물건이 발송, 도착완료 이력이 확인된 이후 도난으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 (3) 파손 및 파괴: 배송 중에 발생한 파손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한 쌍이나 세트 또는 모음으로 구성된 물품(보석류나 미술품 등)은 해당 물품이 한 쌍, 세트 또는 모음의 일부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난, 파손 또는 분실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4. 수리 또는 교환 시 발생되는 배송비용은 수리비용 또는 대체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반송 및 재배송비용은 반품배송비용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상됩니다)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보험자는 손상발견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보험청구서 및 피보험자 사고확인서의 모든 항목을 반드시 기입하고 사진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험의 시작일은 배송개시일이며, 보험금 청구는 배송이 실시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배송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불가) 4. 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100 만원입니다 5. 망실의 경우, 판매자의 사기로 인한 사고 및 도난시에는 <u>경찰서사고접수확인서 등 판매자 사기신고서류, 분실은 운송인의 분실확인증명서</u> 를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6. 피보험자는 목적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수리, 물품반송 등)

주요 특별약관

7. 망실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해외운송의 경우 배송시작일을 포함하여 90 일이 되는 날의 자정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내운송일 경우 7 일)
 8.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손상품을 처리 또는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파손 물품은 보험사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해야 하며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보험금은 해당 장소의 물품수령확인서를 유첨하고 사고접수해 주셔야 확인 후 지급됩니다.
-
1. 반품배송비용담보 특별약관
 - (1) 보험의 목적을 수리 또는 교환하기 위해 반품하는 경우 ①반품배송비용 ②수리 또는 교환된 물품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재배송하는 비용 을 보상 (단,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보상하는 비용은 KRW100,000 과 구매물품의 가격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보
 - (3) 요청서류 : 반품운송장, 반품배송비용 영수증
 2. 반품가능한 망실손해 보장제외 특별약관
 - (1) 보험의 목적을 수리 또는 교환하기 위한 반품(오배송)이 가능한 경우, 망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의 목적이 도착하지 않은 망실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거절시 피보험자와 판매자 간에 보험의 목적에 대한 반품 가능여부를 확인한 메일 또는 문자캡처 내용을 송부해 주시면 보상가능합니다
 3. 피보험자 추가 특별약관
 - (1)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을 수령하는 사람이 상이한 경우, 보험의 목적을 수령하는 사람도 이 계약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혹은 고용인의 고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
 2. 선박, 항공기, 이들의 모터, 장비와 부속용품, 토지, 건물, 영구적으로 설치된 장치, 시설 및 구조물 등
 3. 여행자 수표, 모든 종류의 티켓, 양도성 증서, 금은괴, 희귀하거나 고가의 동전, 현금 또는 동등한 물물, 수집 우표 또는 화폐, 상품권, 고가의 보석, 귀금속, 귀중품
-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적당 300만원 이상. 단, 중고품인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적당 100만원 이상이면 귀중품으로 봅니다.
4. 해충에 의한 파손 / 식물 또는 동물 / 부패하기 쉬운 또는 온도변화에 민감한 화물
 5. 피보험자의 변경작업(절단, 재봉, 튜질 또는 변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파손된 제품
 6. 정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부정 수단, 점진적인 악화, 오용에 의한 손해
 7.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 하자 및 잠정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결함, 하자
 8. 전쟁 또는 모든 유형의 적대행위(침략, 폭동, 내란, 소요 또는 시민소동 등),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정부, 공공기관 또는 세관공무원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 밀수품(또는 금제품), 불법행위
 10. 천재지변(홍수, 태풍, 지진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11. 일반대중 또는 단체의 이용, 회원집단에 개방되어 있는 위치나 장소에서 잠금장치나 보호없이 피보험자 또는 기타 책임자가 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보다 멀게 공공장소에서 방치하거나 주의, 보관, 관리에 태만하여 도난을 당한 물품. 단, 피보험자의 근무처, 학교, 종교사원은 공공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건설현장에 보관된 제품 /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렌트, 리스 또는 빌린 물품
 13.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분실한 물품과 원인 불명으로 사라진 물품(분실의 유일한 증거가 설명되지 못하거나 그 물품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14.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품질보증정책(구매만족보장 등의 서비스 포함)에 해당하는 손해
 15. 중고품인 경우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상되어 있던 손해 / 포장불량으로 인한 여하한 손해
 16. 받는 사람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17. 운송업자의 운송장 상에서 면책품목으로 명기된 보험의 목적.
 18. 운송 중 확연히 드러난 외부의 물리적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닌 기계적, 전기 혹은 전자기적 결함
 19. 손해 입은 보험의 목적을 수리 혹은 복구함에 따라 발생한 가치하락분 및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비용
 20. 녹, 산화, 퇴색으로 인한 손해. 단, 운송기간 중 발생한 외적인 손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1.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악성코드, 컴퓨터 바이러스, 운영체제, 전기적 시스템 사용에 따른 손해.
 22. 판매자의 물품 미발송으로 인한 불착손(포장단위의 구매물품이 전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23. 단순 변심에 의한 손해청구 또는 반송비용은 부담보

보험금 청구서(구매물품보상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사항

보험증권번호		운송장번호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물품수취주소		연락처(휴대폰)	

사고내용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사고일시	20 년 월 일	사고유형	<input type="checkbox"/> 파손 <input type="checkbox"/> 망실 <input type="checkbox"/> 도난
손상물품명세			
물품가액			
예상손해액/ 수리비			
운송장번호 / 택배명 / 택배기사연락처			
사고경위			

보험금 송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 (신용)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금융거래(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계좌정보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간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 (사고정보 포함)
- 조회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간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손해보험협회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 (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진료비 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분쟁 심의업무 (자동차보험에 한함)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업무수탁자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계약 관리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 (최대거래종료 후 5년까지)
- * 거래종료일이란 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www.chubb.com/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처리

동의함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아래 계약자 동의인 작성 및 서명해주시고 피보험자가 14 세 이상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도 필히 동의인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은 보험약관을 숙지하였으며 본 청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귀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 662 조)

본인은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예상심사기간, 예상지급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기명날인 합니다.

동 의 일 20 년 월 일

동의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피보험자와의 관계
계약자/피보험자	(서명)			
법정대리인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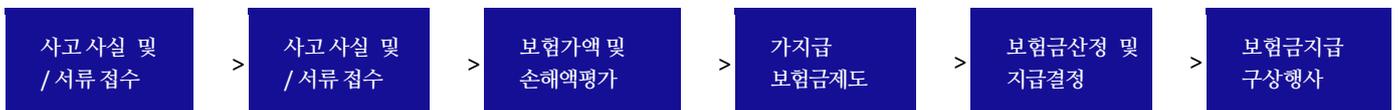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허위입원·진단·장해,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저희 에이스손해보험을 성원해주신 고객님의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험금 청구에 따른 지급절차 등 중요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 회사는 보험금 등 청구 시 최종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할 보험금액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법 및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2.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보험금 청구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또는 해당 영업점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에이스손해보험 사고접수	chubb.kr/ Claim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1833-4227

Chubb. Insured.SM